

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3. 6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07. 3. 7
- 상정일 : 2007. 3. 13(제1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환경보호팀장 최석영)

가. 제안이유

- 제천시 청전동 240-1번지 일원에 조성한 솔방죽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코져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솔방죽 생태공원 현황

시설명	위치 및 면적	주요 시설현황			비고
솔방죽 생태공원	청전동 240-1일원 28,096m ² (8,500坪)	전이구역	방문객 광장 관찰 및 휴식공간 등	○ 토지소유자 국유지(농수산부) - 한국농촌공사 · 충 주 · 제천지사에서 관리	
		완충구역	야생초 화원 수질정화습지 등		
		핵심구역	수생 식물원 개방수면 관찰테크 등		
		기타시설	야외 발효 화장실 1개소 지하수공 1개소 등		

- 사업비 : 1,467백만원(국비 440, 도비 513.5, 시비 513.5)
- 사업기간 : 2005. 11. 11. ~ 2006. 10. 28.

○ 위탁의 필요성

- 야생초 화원 및 수생식물 등의 관리와 수변 공원의 유지보수, 저지의 관수 및 준설 등의 시설유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자 또는 기관에 위탁관리가 바람직함.

○ 위탁운영 조건

- 수탁수수료 : 무료(비수익시설임)
- 유지관리비 : 20,000천원(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)
- 위탁기간 : 3년

○ 수탁자 선정기준

-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기관
- 야생초·수생식물이 훼손·고사되지 않도록 현지인을 두고 탐방객에게 편의 제공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동수)

【法的檢討】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지방재정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,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등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솔방죽 생태공원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음.

【行政的檢討】

-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솔방죽 생태공원의 야생초, 수생식물, 수질정화습지 등의 자연식물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

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운영 관리비를 지원해야 됨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됨.

- 솔방죽 생태공원을 14억 6천 7백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한 목적이 시민들에게 친환경 자연학습장은 물론 정신적으로 풍요로 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영구시설물로 보호관리 되어야 함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므로 관리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도 요구됨.
- 따라서, 직영 관리와 위탁관리시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, 위탁관리의 효율성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시설운영관리비 지원 예산확보 대책과 위탁관리 계획은?(김병창 의원)
- 많은 예산을 투자 운영에 따른 장단점 분석없이 한번도 운영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?(김병창의원)

나. 답변요지 <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>

- 2천만원 예산확보 하였고, 저수지의 소유와 관리권이 있는 농촌공사 와 협의중임.
- 솔방죽 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권을 얻어 시에서 시설하였으며, 향후 생태공원 관리는 한국농촌공사와 제천시가 유기적인으로 협조하여 시민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솔방죽 생태공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1부. 끝.